

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농가 이력관리요령

-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든 소사육농가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.
 - 소가 출생하거나 소를 팔거나 사거나 폐사한 때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
 - 사육하는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
-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이력추적제 시행 목적

-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, 포장처리,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습니다.
- 원산지·등급 등 허위 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, 농가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합니다.

‘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’ 주요내용

- 소 사육농가는 소가 출생하거나, 거래(매매)한 경우에는 지역의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·폐사하거나, 소를 양도·양수, 수입·수출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(법 제3조)
- 소가 출생하여 위탁기관에 신고할 경우, 위탁기관은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
 - 소의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, 신고한 농가는 귀표를 부착(법 제4조)

〈소가 출생한 경우〉

- 소 사육농가는 소가 출생한 때에는 위탁기관에 30일 내에 출생내용을 신고합니다.('출생등 신고서'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, 구술, 전화 등)
- 위탁기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,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합니다.

〈소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(폐사 포함)〉

- 소를 팔거나 구매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30일 내에 신고합니다.
(‘출생등 신고서’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술, 전화 등)

〈귀표가 탈락된 경우〉

- 소의 귀표가 탈락된 경우 탈락 내용을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위탁기관은 7일 이내에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

〈신고한 정보의 변경〉

- 신고한 정보 등이 변경될 때마다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사육농가 이력관리 세부요령

- 송아지가 태어나거나, 기르던 소를 팔거나, 샀을 경우에는 위탁기관(관할지역 축협 등)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한우 뿐만아니라 젖소, 육우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신고할 때는 서면, 구술, 전화 등 방법으로 하세요.
 - 신고후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현재 사육하고 있던 소는 2009년 6월21일까지 출생등 신고서를 제출하고,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 - 귀표는 국가공식 귀표(KOR+12자리)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
 -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고, 전산등록 한 소 만이 2009.6.22부터 거래하거나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합니다.
 - 젖소 농가 등에서 기부착한 자체부착 귀표나 관리번호가 없는 민이표는 도축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위탁기관에 연락하여 정부에서 배부한 귀표를 다시 부착하셔야 합니다.
 - 도축 등을 위한 출하의 경우 사전에 휴대폰(6626+인터넷접속기)을 이용하여 해당 소가 귀표장착 및 전산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.
 - 우시장에서 소를 거래(사거나 팔 경우)한 후에도 반드시 위탁기관에 전화, 서면 등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소의 개체식별번호,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및 상대방 인적사항 등
 - 출생 등 신고 후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소의 출생등 신고서식

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19 51 01

신청인 (서명 또는 약속)

대리신고인의 경우
신고인 성명
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

* 뒤쪽의 신고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농림수산식품부